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99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최혁진 · 정혜경 · 윤준병
윤종오 · 박민규 · 윤후덕
조계원 · 이수진 · 손 솔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서는 민간 의료 공급만으로 필수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낮은 수익성이나 인구 규모 등을 이유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필수 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8조의4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라. 그 밖에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보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및 전년도 집행 실적
2. 사업별 추진 현황
3. 사업이 완료된 경우 그 성과 및 사후관리 현황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자료 제출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u>

③ ~ ⑥ (생략)

<신설>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라. 그 밖에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의4(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보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및

전년도 집행 실적

2. 사업별 추진 현황

3. 사업이 완료된 경우 그 성과
및 사후관리 현황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사업
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
고의 방법, 자료 제출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